

● 제298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1971)

2020. 12. 1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 김경우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1971

### I. 조례안 개요

#### 1. 제안경위

- 가. 제안자 : 김경우 의원 대표발의(외 15명)
- 나. 제출일자 : 2020년 10월 16일
- 다.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 2. 제안이유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20. 7.) 개정에 따라 법령에 따른 의무적 출자·출연 및 연례적, 반복적 출자·출연 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일정기간 정하여 출연금을 얻을 수 있도록 함.
- 본 조례 개정으로 연례적 출연동시에 따른 입법 및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 조례해석의 명확성을 기해 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이에 사전의결 실시를 위한 ‘일정기간’을 정하여, 연례적, 반복적 출자·출연에 대한 동의안 심사를 정비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입법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시장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3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개정).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유(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타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2020. 7.)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례적, 반복적 출자·출연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전의결을 실시하고자 함.

〈표〉 세출 예산과목 [별표11]

현 행		개 정	
306	01. 출연금	306	01. 출연금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중략)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중략)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출자·출연 및 연례적·반복적 출자·출연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일정기간 정하여 얻을 수 있음
	(생략)		(생략)

출처 :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20)

##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의안번호 1971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 의결절차 개선에 따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sup>1)</sup>의 ‘매년’ 출자출연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2년’ 마다 받는 것으로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출연금 교부) (생략)  <신설>	제11조(출연금 교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시장은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2년마다 받아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나.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출연기관 출연동의 현황

### 1.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sup>2)</sup>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 4<sup>3)</sup>에 의거하여 의회는 사전에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출연기관별(총 5개소)<sup>4)</sup> 출연 동의안 심사를 실시하고, 출연금 편성을 위한 출연여부를 승인하고 있음.
- 본 법안의 취지는 출자·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적 통제를 강화해 지방자치단체가 편법적 방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방지 하고자 하는 것임.

### 2.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

- 
- 2)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3)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출자·출연 사무명
    -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6. 이사회 회의록
    - 7. 결산 보고서
    -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 4)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하지만, 최근 5년간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출자·출연기관 동의안 심사 결과, 총 21건, 100%가 원안 가결되었음. 이는 연례적 출연 동의에 따른 반복적인 행정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붙임 참고

출자·출연기관	심사여부					심사결과
	'16	'17	'18	'19	'20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	○	○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	○	○	○	○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	○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	○	○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	○	○	○	

\* 2019년도 설립

#### 다. 보건복지위원회 출연기관 개별조례 사전의결 신설

-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 의결절차 개선에 따라 ‘사전의결’을 일정기간 내에 실시하여 입법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5조<sup>5)</sup>에 따라 상임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2년에 1번씩 위원회 구성이 변경됨에 따라 그 주기에 맞춰, 사전의결 기간은 ‘2년’으로 정함.
-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출연을

5) 제3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중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막기 위하여 서울시의회로 하여금 매년 출연여부를 심사토록 하는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서울시의회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 합법성 등을 감시하고 있으며 예산심의를 통해 예산의 적정성을 매년 심의하고 있음.

- 이에 연례적·반복적인 출연동의안 심의를 통한 입법적·행정적 낭비를 지양하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등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출연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있는 바 2년에 1회 출연동의안을 심의한다고 하더라도 출연기관의 견제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라. 보건복지위원회 출연기관 평가 현황

- 또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6),117),168)

6)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 10. 8.>

7) 제11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8) 제16조(경영실적 평가·진단) 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조에 의거하여, 출연기관에 대한 운영심의위원회, 경영실적 평가, 지도·감독 등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표〉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출연기관 평가 현황

출자 출연기관	주기			평가내용
	운영 심의위원회	경영실적 평가	지도· 감독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심의사항 발생시	1년	상시	- (운영심의위원회) 최초 설립, 전년 대비 출연금 10%이상 증액 시 운영의 타당성 - (경영실적 평가) 예산, 회계, 사업운영 - (지도·감독) 이슈사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서울특별시 공공보육재단				

마. 조례 개정안 관련 집행부 의견 : 원안 동의

○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연례적, 반복적 출자·출연에 대해 일정기간 사전의결을 실시함으로써 매년 동의절차 진행에

-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시민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8.>
- ⑤ 시장은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따른 입법 및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 재단 운영의 안정성 도모가 가능하므로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 3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지침의 개정사항을 조례상에 반영하여, 입법정비를 통해 조례해석의 명확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쟁점사항은 없음.
- 본 조례 개정으로 연례적, 반복적 출자·출연에 대해 일정기간 사전의결을 설정하여 입법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공공보건의료재단의 경우 2017년 설립 이후 기관의 안정화 단계가 되었으므로 기관의 설립목표에 맞는 성과가 달성되고 있는지 등의 세밀한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본 조례 개정안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참 고      관련법령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의 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조례

###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은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기금 및 출연금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출연금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출연금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재산 및 운영재원 등) ①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3. 기부금
4. 그 밖에 수익금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출연금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붙임**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 세부 결과**

연도	출자·출연기관	심사결과	검토사항
2016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원안 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의안은 법적·정책적 요건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li> <li>- 여성재단의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재단의 건전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운영의 효율성 강화 및 자체 수익사업 운영의 내실화 등을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li> </ul>
	서울시 복지분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원안 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재단과 50플러스재단의 법령상의 근거와 설립 목적 및 기능 등을 감안할 때, 각 재단에 대한 2017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li> <li>- 다만, 유사 사업의 중복 실시가 없도록 서울시복지재단 및 여성가족재단 등 기관 간의 업무상 조정·연계가 상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음.</li> </ul>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원안 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액을 제외하고 출자·출연의 여부만을 승인하도록 하는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서의 정격을 갖고 있는 바, 집행부가 제출한 출연동의안에 2017회계연도 출연금액(36억5천6백)을 명시한 것은 의회의 예산집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지방재정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삭제 등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li> </ul>
201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원안 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생활 속 성평등 전문기관으로 재단의 존립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비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있음.</li> </ul>
	서울시 복지분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원안 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재단과 50플러스재단의 법령상의 근거와 설립 목적 및 기능 등을 감안할 때, 각 재단에 대한 2018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li> <li>- 다만, 유사 사업의 중복 실시가 없도록 서울시복지재단 및 여성가족재단 등 기관 간의 업무상 조정·연계가 상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음.</li> </ul>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원안 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번 출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li> </ul>

연도	출자·출연기관	심사결과	검토사항
2018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원안 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의안은 법적·정책적 요건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li> <li>-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가족재단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강화 및 자체 수익사업인 여성플라자 운영의 내실화 등을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li> </ul>
	서울시복지재단	원안 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의안은 법적·정책적 요건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li> <li>- 앞으로 선임될 재단의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재단 사업계획 및 집행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토대로 2019회계연도 예산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는 방안을 모색할 당위가 있다고 보임.</li> </ul>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원안 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의 사회서비스의 선택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현의 당위성이 인정되어지므로 금번 출현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짐.</li> <li>- 옥상옥 조직이 될 소지의 문제 또한 논란 및 기존의 관리조직과 역할 및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의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서울복지재단과의 역할 중복 등이 존재함.</li> <li>- (반대) 시범사업 국비지원에 대해서도 아직 예산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및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음.</li> <li>-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품질 개선의 목적이기에는 시장에서의 공급이 5% 내지 7%로에 국한되므로 근본적인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품질개선에 한계가 존재함.</li> <li>- 서울시 산하공공기관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므로 재단설립은 신중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li> </ul>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원안 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의안은 법적·정책적 요건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li> <li>- 앞으로 선임될 재단의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재단 사업계획 및 집행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토대로 2019회계연도 예산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는 방안을 모색할 당위가 있다고 보임.</li> </ul>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원안 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의안은 법적·정책적 요건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li> </ul>
연도	출자·출연기관	심사결과	검토사항

2019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원안 가결	-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생활 속 성평등 전문기관으로 재단의 존립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비의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있음.
	서울시복지재단	원안 가결	- 법령상의 근거와 설립 목적 및 기능등을 감안할 때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예산안 심의 시 신규 추진 사업 및 조직 개편 시 타 기관과의 사업 중 특성 여부 등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원안 가결	- 법령상의 근거와 설립 목적 및 기능등을 감안할 때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소속기관의 확대에 따른 출연금의 확대편성 및 인력 관리(550명(19년) → 4,126명(22년)) 등 재단 규모의 대형화로 인한 돌봄서비스제공의 안정적 제공 기관 확대 및 재정 지출의 적정 규모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므로 재단 본부의 세밀한 관리가 요망됨.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원안 가결	- 법령상의 근거와 설립 목적 및 기능등을 감안할 때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원안 가결	- 동의안의 의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볼 수 있음.
2020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원안 가결	-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생활 속 성평등 전문기관으로 재단의 존립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비의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있음.
	서울시복지재단	원안 가결	- 법령상의 근거와 설립 목적 및 기능등을 감안할 때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복지재단의 신규 사업추진 적합성 및 추진 사업 중 타 사업과의 중복성 및 복지재단의 본래 목적과의 적합성 등의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 필요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원안 가결	-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평가 현재까지는 단순히 실적위주로만 파악되고 있어 실제 이용자의 만족도 등 질적인 부분의 만족도까지 파악하는 것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원안 가결	- 조례상의 근거와 설립 목적 및 기능등을 감안할 때 출연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할 수 있겠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원안 가결	- 재단이 설립 된지 3년이 경과함에 따라 기관의 안정화 단계는 지났음으로 기관의 설립목표에 맞는 성과가 달성되고 있는지 등의 평가가 세밀하게 필요하다고 하겠음.